Vol. 277 2017.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n insurance

The Financial Insurance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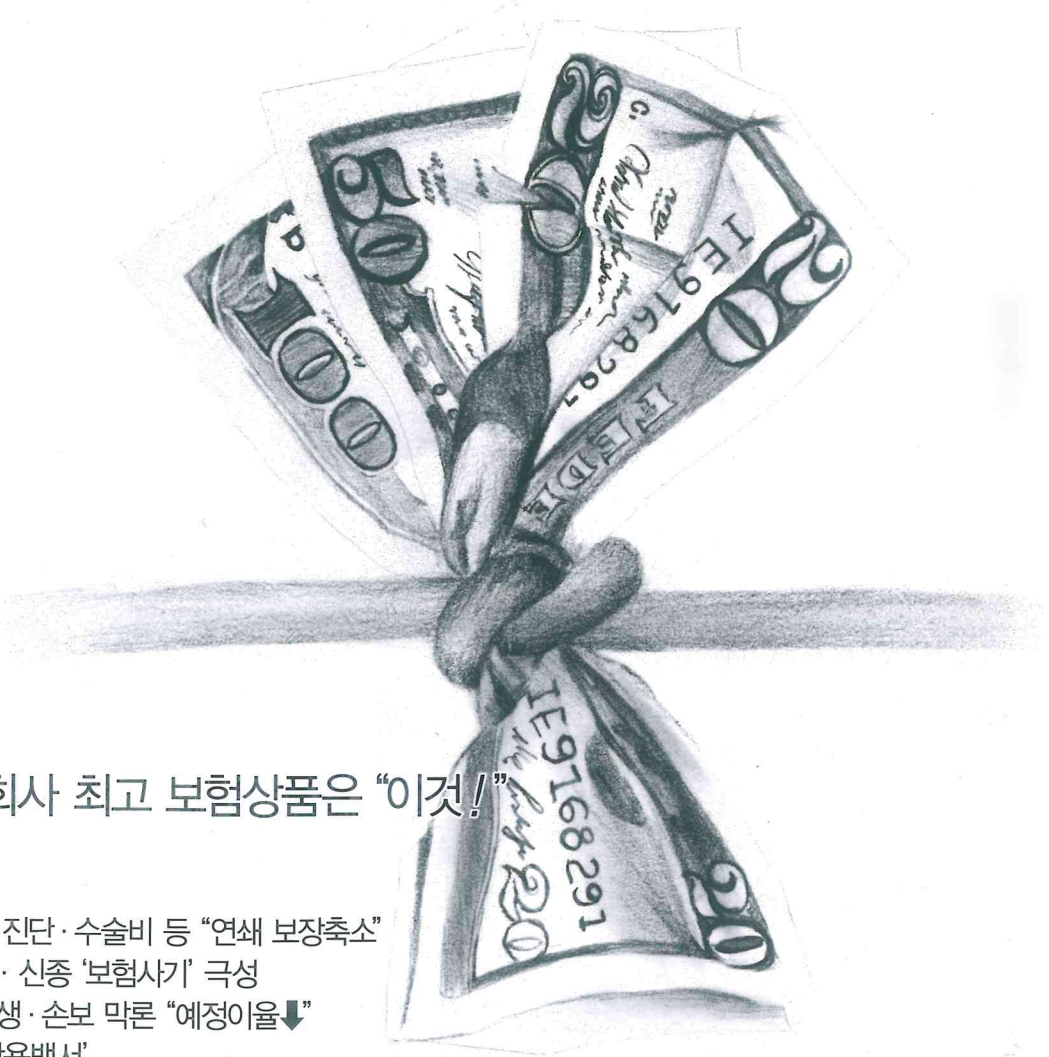

FOCUS

가성비 甲… 우리회사 최고 보험상품은 "이것!"

SPECIAL REPORT

손보상품, '2분기' 풍향계… 진단·수술비 등 "연쇄 보장축소"
'후발백내장'으로 재테크?… 신종 '보험사기' 극성
보험료인상 '4월 도미노'… 생·손보 막론 "예정이율⬇"
新실손보험 개막… 상품 '활용백서'
실버·간병보험 "무용론 솔솔"… 65세이상 노인 '간병비' 급여화 추진

SPECIAL INTERVIEW

대구수성우체국 김봉숙 FC
고려대 액티브시니어연구원 김경철 원장

HOT ISSUE

"당신은 보통사람 입니까?"
'단짠·맵단'열풍에 2030세대 건강 "빨간불"
라이나생명, '무제한 임플란트' 런칭… "홈쇼핑서 첫 시험대"

창간 24 주년 기념호

ISSN 1599-0079

'안전띠 미착용'시 보험사 면책?…
"원칙적 무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법령위반'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규정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이어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해 무효이기 때문이다.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에 관해 피고(보험회사)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담보항목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때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담보'가 포함돼 있다.

– 위 계약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함)이 규정돼 있었다.

–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추돌당해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맥브라이드표 상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

– 원고는 위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이 담보하고 있는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보험사)는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의 20%를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면서 일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이에 원고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판결]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다. 또한 그 고의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확대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상해에 관한 것이다(이 점에서 음주·무면허운전과 구별된다).

따라서 안전띠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감액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심판결]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발생 내지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손해가 확대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손해확대 대한 고의조차도 없는 통상의 무면허·음주운전과 구별 됨).

상법 제663조 및 제732조의2, 제739조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안전띠를 매지 않음으로써 손해확대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보험금은 지급하되 일정비율(운전석 및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을 감액 지급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는 위 보험수익자 보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감액비율도 적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해서는 고의가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위 조항들의 입법취지를 비춰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했을때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때에도 보상된다. 따라서 약관서 규제한 '법령위반행위'규정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해 무효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상법은 인보험에서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불문,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 사건 감액약관은 무효한 것으로 본다.

[평석]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인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참작돼야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감액약관은 무효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판결이 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상법은 인보험에서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불문,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즉,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

이러한 기본적인 법리 하에서 이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이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라는 사실은 대법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입장이고(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등 참조), 이는 지극히 타당하다.

문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보험사고인 '상해'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피보험자 스스로 권총으로 자신을 쏘는 행위나 죽기 위해 고층의 베란다에 올라가서 건물 밖으로 투신하는 행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해나 사망에 대한 고의로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미 오래 전에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해 여기서의 고의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면책약관을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의 고의는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자체에 대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상해나 사망에 대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이 사건 감액약관을 둔 취지에 관해 "안전벨트 미착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해 가입자의 과실을 일부 반영하고…"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사건 감액약관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한 잘못(과실)에 대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해 허용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InS

글_ 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보험편)으로 근무